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7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윤준병·진성준·김수흥

윤미향 • 이용빈 • 양이원영

이광재・이수진비・인재근

이해식 · 김성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.

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 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중 "설치계획"을 "설치계획,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배출시설의 설치) ① 대통	제11조(배출시설의 설치) ①
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	
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	
설치・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	
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	설치계획, 가축분뇨처리
장・군수・구청장의 허가를 받	및 악취저감계획
아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